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852

발의연월일: 2023. 6. 23.

발 의 자:윤준병·윤재갑·강득구

김영배 • 양정숙 • 민형배

김성환 · 양경숙 · 전해철

김수흥 · 서영교 · 오영환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② 외국에서 영양사면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를 받은 사람, ③ 외국의 영양사 양성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한 교를 말한다)를 졸업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평생교육법」 제31조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학교·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학교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교에서 면허에 상응하는 전공분야의 교육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 영양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평생교육법」 제31조 등에 따른 학교·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이들을 국가시험 응시자격에서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1호).

법률 제 호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영양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서"를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규정에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학교·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학교"라 한다)에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영양사의 면허) ① 영양사	제15조(영양사의 면허) ①		
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		
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의 규정에 따른 학교, 「평생		
<u>방송통신대학에서</u> 식품학 또	교육법」 제31조제4항, 제32		
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조제1항 또는 제33조제3항에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	따른 학교·사내대학 또는 원		
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는 요건을 갖춘 사람	<u>(이하 "학교"라 한다)에서</u>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